

[일련번호 : 104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회계처리 절차 이행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◻◻과는 「지방회계법」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등에 따라 회계관직 지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36조(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)에 따르면 ‘재무관·지출원 및 현금 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.’라고 명시하여 회계기관의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토록 함으로써 회계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,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휴가·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과는 2024년 회계관계인·직원의 직위 지정에 겸할 수 없는 분임재무관과 출납원을 동일하게 지정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회계관직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